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결정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9. 6. 24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9. 6. 25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99. 7. 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과장 권병준)

가. 제안이유

- 부천시 경인선 전철역(소사·중동·송내역) 역세권을 대상으로 향후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를 계획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상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도시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코자 함
- 이에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듣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관내 소사역 주변 818,342㎡(247,548평), 중동·송내역 주변 1,180,219㎡(357,016평)에 대한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상세계획을 수립, 시행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도시건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구전화국부터 중동지역까지 확대해서 상세계획에 포함할 용의는 없는가?	○ 중동지역 주민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상세계획을 원하는 의견이 50% 이상일 경우 상세계획에 포함하겠음.
○ 송내남부역 부근이 여느 지역보다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므로 특별상세구역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가?	○ 상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특별상세구역 지정에 적극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음.

4. 토론탐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찬성의견서 채택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8. 첨부서류

○ 의견서 1부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결정안의견서

의안번호	176	안 건 명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결정안
제 안 자	부천시장	의결년월일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1999. 7. 6)

○ 부천시 경인선 전철역(소사·중동·송내역) 역세권을 대상으로 향후 준공업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를 계획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상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도시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나 여는 지역보다 도시기반이 열악한 송내남부역 부근을 상세계획안에 포함만 할 것이 아니라 특별상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함.

1999년 7월 6일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결정안

의안번호	제176호
의결년월일	99. 7. 8 (제71회)

제출년월일 : 1999. 6. 2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사유

- 부천시 경인선 전철역(소사·중동·송내역) 역세권을 대상으로 향후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를 계획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상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도시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코자 함
- 이에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듣고자 함.

□ 주요내용

- 관내 소사역 주변 818,342m<sup>2</sup>(247,548평), 중동·송내역 주변 1,180,219m<sup>2</sup>(357,016평)에 대한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상세계획을 수립, 시행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도시건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2

### 부천도시계획(상세계획)결정안

□ 도시계획결정(변경)조서

- 도시계획(상세계획)결정조서

구분	상세계획명	위 치	면적(m <sup>2</sup> )	비고
신설	소사역세권 상세계획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일원 및 소사구 소사본동, 일원(소사역 주변)	818,342	
"	송내역세권 상세계획	부천시 원미구 중동, 상동 일원 및 소사구 송내 동 일원(중동, 송내역 주변)	1,180,219	

- 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52,180,000.0	-	52,180,000.0	100.0	
주거 지역	소 계	19,502,835.5	증)385,000.0	19,887,835.5	38.1
	일반주거지역	12,588,304.5	증)385,000.0	12,973,304.5	24.9
	제1종일반주거지역	841,837.0	-	841,837.0	1.6
	제2종일반주거지역	5,686,826.0	-	5,686,826.0	10.9
	준주거지역	385,868.0	-	385,868.0	0.7
상업 지역	소 계	2,918,698.0	-	2,918,698.0	5.6
	중심상업지역	471,940.0	-	471,940.0	0.9
	일반상업지역	2,246,632.0	-	2,246,632.0	4.3
	근린상업지역	200,126.0	-	200,126.0	0.4
공업 지역	소 계	4,633,459.0	감)385,000.0	4,248,459.0	8.1
	일반공업지역	3,012,459.0	-	3,012,459.0	5.8
	준공업지역	1,621,000.0	감)385,000.0	1,236,000.0	2.3
녹지 지역	소 계	25,125,007.5	-	25,125,007.5	48.2
	생산녹지지역	1,388,291.5	-	1,388,291.5	2.7
	자연녹지지역	23,736,716.0	-	23,736,716.0	45.5

## ○ 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조서

## • 미관지구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연장(m)	폭원(m)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중앙2지구	5종	상·중·소사·괴안·역곡동 일대	6,851	20~25	170,280	경고198 (94. 7. 16)
변경	중앙2지구	5종	상·중·송내·소사·괴안·역곡동 일대	9,840	20~25	245,000	

##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사용형태	기능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중로	2	8	15	일반도로	집산도로	280	중2-10호선	중3-9호선	
변경	중로	2	8	15		집산도로	625	중2-10호선	중3-2호선	노선연장
기정	중로	2	14	15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975	대1-1호선	중1-4호선	구간 내 연장 493m
변경	대로	3	25	25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493	대1-1호선	대3-2호선	노선분리 및 확폭
변경	중로	2	14	15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477	대3-2호선	중1-4호선	노선분리
기정	중로	3	31	12	일반도로	국지도로	572	중3-11호선	소2-51호선	구간 내 연장 390m
기정	소로	1	70	10	일반도로	국지도로	331	대3-5호선	중3-31호선	
변경	중로	1	45	20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721	대3-5호선	중2-9호선	노선합병 및 분리, 확폭
변경	중로	3	31	12	일반도로	국지도로	182	중3-11호선	중2-9호선	노선분리 및 연장단축
기정	소로	1	44	10	일반도로	국지도로	84	소1-38호선	송내동 469	
변경	소로	1	44	10	일반도로	국지도로	259	소1-38호선	광2-4호선	노선연장
기정	소로	1	48	10	일반도로	국지도로	479	중2-14호선	송내동 497	
변경	소로	1	48	10	일반도로	국지도로	503	중2-14호선	송내동 552	노선연장
기정	소로	1	72	10	일반도로	국지도로	73	중3-31호선 소사본동 261	소사본동 134-1	
변경	소로	1	72	10	일반도로	국지도로	114	소사본동 261	소사본동 133-21	노선연장
기정	소로	3	487	6	일반도로	국지도로	560	대1-1호선 소사본동 91-31	대1-1호선 심곡본동 797	
변경	소로	3	487	6	일반도로	국지도로	245	대1-1호선 소사본동 91-31	소사본동 91-41	노선분리 및 연장단축
변경	소로	3	663	6	일반도로	국지도로	183	대1-1호선 심곡본동 797	송내동 796-41	노선분리 및 연장단축

□ 참고사항

- 상세계획구역 결정 : 1997. 8. 13(경기도고시 제1997-275호)
- 주민설명회 개최
  - 일 시 : 1998. 10. 13
  - 장 소 : 부천시청 대회의실(3층)
  - 참석인원 : 약 190명(각계 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
- 주민의견 청취결과
  - 공람공고
    - 제1회 경인일보 : 99. 6. 2~6. 17(14일 간)
    - 제2회 경기일보 : 99. 6. 2~6. 17(14일 간)
  - 제출의견 : 8건
  - 제출의견 및 검토의견

의견제출자	제출의견요지	검 토 의 건	비고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72 (주)유성기업 유시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수 토지소유자 반대만으로 전체부지가 영원히 개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특별설계단지에 대하여 시장직권으로 입안 결정 요구</li> <li>○ 소수 토지소유자의 무리한 요구 등에 의하여 개발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특별설계단지 내에서 단독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구획정리방식을 적용 지자체가 상세계획을 수립하든지 특별설계단지에서 제외 또는 단독개발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설계단지는 창의적 개발과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지역에 특별설계단지로 지정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설계단지 내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광장)을 시장직권으로 상세계획 입안결정함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임</li> <li>○ 단독개발방식은 송내역세권구역 전체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개발 측면, 더 나아가서는 지역주민 즉,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어려운 사항임</li> </ul>	

의견제출자	제출의견요지	검 토 의 견	비고
부천시 원미구 중동 805-5 민경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동 805-5번지의 상세계획으로 지정된 용도 E1을 인근필지 805-6번지의 용도와 동일한 용도 A2로 변경건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동 805-6번지는 현재 공동주택으로 806번지 및 미관지구 저축필지 805번지와 공동건축을 권장키 위하여 A3로 지정한 것으로 A2표기는 A3의 오기사항임.</li> <li>○ 학교주변에 블록 단위로 지정된 E1 용도는 개별법(학교보건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사항으로 폐지하고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C2용도로 지정하였으며,</li> <li>○ 중동 805-5번지가 미관지구 저축필지인 A2와 공동건축할 경우 A2용도로 재건축이 가능하며, 805-6번지가 단독건축할 경우 A3용도에서 C2용도로 변경되는 것임.</li> </ul>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00 (주)삼정 김영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설계단지(A-10블록)전체토지에 대하여 공공토지로의 개발계획(안) 일부변경 및 372-1번지 토지를 근린생활, 상업시설용도, 아파트(주상복합건물)로 개발가능하도록 상세계획 수립요망</li> <li>○ 송내동 377-1번지에 대하여 용적률 300% 이상으로 완화, 공공시설확보 15% 및 공장용지 확보(30%)는 인근 특별설계단지(A-10)블록과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공장부지로의 개발(부지확보)삭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설계단지는 공동건축(규제사항)요소를 도입, 일괄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 바, 개별소유 필지별 도입기능의 배분은 어려운 실정임.</li> <li>○ 부족한 기반시설과 무질서한 개발방지를 위한 계획으로 밀도계획은 상세계획구역 전체 기반시설 용량을 감안한 계획으로 용적률 상향조정은 어려움이 있으며,</li> <li>○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연도(2006~2011년)에 주거용지로 변경되는 지역인</li> </ul>	

의견제출자	제출의견요지	검 토 의 견	비고
	<p>및 아파트 건설비율을 90% 이상으로 입안요망</p>	<p>바 향후 공장용지는 대체지정 후 용도지역 변경시에는 공장용지 확보대책으로 인한 공공시설 용지부담 비율(12%)은 해제됨</p>	
<p>부천시 소사구 소사본3동 135 (주)신한주철 관리인 (주)조흥은행 손태호</p>	<p>○소사구 소사본동 135번지 공원용지를 과다하게 지정하고 공공시설용지 15% 제공으로 토지활용시 많은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철회요구</p> <p>○소사구 소사본동 244-66(1,558㎡) 및 243-127(1,122㎡)는 토지활용가치가 크게 감소되어 있는 실정으로 금번 상세계획에 포함요구</p> <p>○소사구 소사본동 135번지에 대한 기준용적률의 최대한 상향조정(250→300%)</p> <p>○(주)신한주철은 법정관리 중에 있는 회사로 공장용지가</p>	<p>○아파트 개발예정 지역으로 인구증가를 감안 초등학교 1개소 입지가 필요한 바 현재 공원용지 157번지와 치환할 계획이며, 개발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부족 현상을 대비하고 도시환경 유지를 위하여 공공시설 확보비율을 결정한 것으로서 공공시설 부담비율 변경은 현실적으로 반영에는 어려움이 있음.</p> <p>○상세계획 포함은 상세계획구역 변경절차를 재이행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p> <p>○밀도계획은 상세계획 내의 기반시설 용량을 감안한 계획으로 용적률 상향조정은 어려우며 현재 용적률 250%는 상세계획상의 기준용적률로 상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제사항(건축한계선) 또는 권장사항(공동건축 등)을 준수할 경우 기준용적률보다 추가 확보가 가능한 사항임.</p> <p>○상세계획은 도시 내 일정구역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계획적 개발을</p>	



의견제출자	제출의견요지	검 토 의 건	비고
	<p>공원용지로 수용, 부분적으로 처분될 경우에도 관할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할 뿐 아니라 법정관리 폐지사유가 되며, 현재로서는 공장이전에 따른 비용부담 및 회사 청산시 320명 종업원의 실직 등 문제발생에 대한 대책과 도시계획 시행시 부천시 책임요구</p> <p>○ 신한주철 소유토지인 소사본동 244-66, 243-127번지는 도로개설로 인하여 쓸모없는 토지로 생산활동에 사용치 않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토지세가 과다부과되고 있는 데에 대한 해결책 요구</p> <p>○ 인근 삼양중기 토지에는 공원용지 계획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신한주철토지에 꼭 공원을 지정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수용당하여야 하는 합당한 사유 및 편파적이고 편의주의적 행정처리를 해결하여 바로잡고 도시계획에서 제외요구</p>	<p>유도하는 계획으로 변경개발시 상세계획 적용을 받는 것으로 현용도 준치가 가능하며, 공업활동의 지속적유지가 가능한 사항임</p> <p>○ 금번 상세계획 제외구역으로 토지이용 및 토지세 과다부과 문제는 (주)신한주철에서 처리될 사항임.</p> <p>○ 아파트 개발예정지역으로 인구증가를 감안 초등학교 1개소 입지가 필요한 바 현재 공원용지 157번지와 치환할 계획이며, 인근부지(삼양중기) 또한 동일비율의 공공시설용지(도로, 공원 등)를 부담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도시 전체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지를 도모하는 차원에서의 계획으로 금번 계획에서의 제외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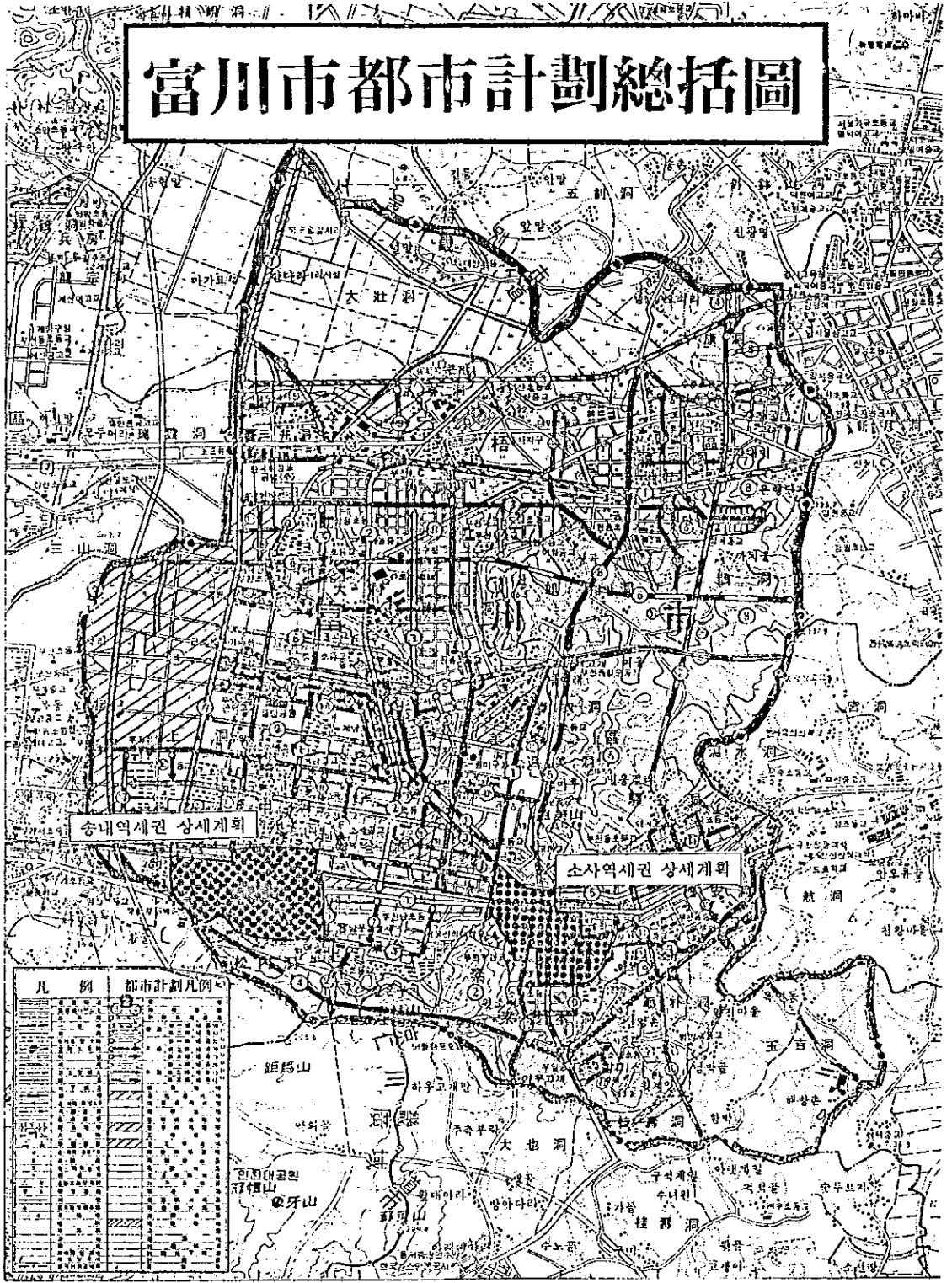
의견제출자	제출의견요지	검 토 의 건	비고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35 (주)신한주철 손창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사구 소사본동 135(신한주철) 동쪽 15m 도로에 주진 출입 허용지점 추가지정 요망</li> <li>○ 공장 전체를 이전할 계획으로 부지전체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공장용지 확보 대체로 인한 공공시설용지 부담비율 12% 추가지침 철회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출입허용지점 추가지정 요청구간에 대하여는 원활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추가 지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li> <li>○ 준공업지역으로 현행 건축조례에서 아파트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향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변경(2002~2006)예정인 바, 향후 공장용지 대체지정 후 용도지역 변경시에는 공장용지 확보 대체로 인한 공공시설용지부담 비율(12%)은 해제됨.</li> </ul>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1가 191 박명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내구역 A-10블록 특별설계단지 계획 내용쪽 경인국도에서 경인철도를 넘어가는 도로확장은 동의하나,</li> <li>○ 3개소의 광장 중 중동역쪽의 광장 및 단지 중앙의 광장은 역할수행이 가능하나 남서측 모서리 광장에 대하여는 작은 면적의 광장이 남서측 모서리에 설치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경인국도 사거리의 건축물이 있는 다른 모퉁이들과 균형에도 맞지 않고 사유재산에도 지나친 피해를 주게 되는 계획이므로 모서리 광장계획 폐지 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세계획(안)에 상기부지를 광장으로 계획한 것은 특별설계단지 내 주보행동선과 업무 및 문화집회시설과의 상호 보완적 기능을 담당토록 도입하였던 것으로 특별설계단지에 대한 계획(안)으로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좋은 개발안이 있는 경우 수용할 수 있는 사항임.</li> </ul>	

의견제출자	제출의견요지	검 토 의 건	비고
부천시 소사구 송내 1동 317 (주)서흥캡셀 양주환	○ 송내동 317(서흥캡셀)공장 내부 도로개설은 소음, 진동, 대기, 기타 여건에 의한 제 조활동 곤란, 콘테이너 차량 진입 및 회전불가, 4층 건물 철거로 인한 공장면적 감소 등이 발생하므로 도로 개설 계획 철회	○ 지역 전체의 편익과 원활한 통행 등 공익적인 차원에서 도로의 연장개설 은 불가피한 것으로 도시계획 철회 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인천시 부평구 산곡 동 산37-4 현대A 301동 701호 최광호	○ 중동고가차도 확폭시 중동 역(구 중동역) 남부쪽의 차 량 진·출입로 개설도 함께 계획요망  ○ 도로확폭으로 인한 잔여토지 (과소필지, 부정형토지)에 대 하여 인접토지와 공동건축을 유도하는 계획은 오히려 개 발자연에 따른 도시미관 저 해요인이 되므로 공동건축유 도보다는 소규모 도시공간으 로 시민의 쉼터 조성이 바람 직함.  ○ 도로확폭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은 특별설 계단지에 대토하여 주는 것 으로 계획하면 수용에 따른 마찰을 최소화하고 민원수 렴 행정이 될 것임.	○ 중동고가차도 확폭시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시민의 편리를 도모코자 고 가차도 좌우측에 남쪽방향 차량 진· 출입로 개설을 구상 중이며, 세부시 설계획은 실시계획인가 등을 통하여 구체화될 것임.  ○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입지조건을 감 안하여 공동건축을 권장한 사항으로 잔여필지 매수는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보상시 지역여건을 감안 종합검 토할 계획임.  ○ 편입토지의 특별설계단지 대토는 특 별설계단지 시행주체와 토지수용주 체가 다르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임.	

의견제출자	제출의견요지	검 토 의 건	비고
<p>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66-17 원용극 외 53명,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81, 강태영 외 85명</p>	<p>○소사구 소사본2동 66번지 일원은 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된 곳이 아니며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지역이 균형 있는 발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교통체증으로 인한 매연, 공해발생으로 주거환경이 적합치 않으며 재개발시 건축용적률 600%로 고층 주상복합(20층) 건축시 단일아파트로 소사동 일대 도시기반에 영향이 크므로 재개발구역 지정반대</p>	<p>○도시여건이 변경되었으나 주변환경이 열악하고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도시기능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소사역주변을 특별설계단지로 지정, 향후 여건조성시 도심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적인 시가지 개발 및 도시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도시기능 및 역세권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97. 8. 13(경기도 고시 제97-275호)로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 현재 상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사항으로 상세계획구역 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며,  ○재개발지구 지정은 토지소유자 등의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경우 관련법령의 절차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자를 선정하여 시행되는 것임.</p>	

부천시도시계획총괄도

# 富川市都市計劃總括圖



凡例	都市計劃凡例
1. 도시계획구역	도시계획구역
2. 도시계획구역외	도시계획구역외
3.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구역내
4. 도시계획구역외	도시계획구역외
5.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구역내
6. 도시계획구역외	도시계획구역외
7.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구역내
8. 도시계획구역외	도시계획구역외
9.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구역내
10. 도시계획구역외	도시계획구역외
11.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구역내
12. 도시계획구역외	도시계획구역외
13.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구역내
14. 도시계획구역외	도시계획구역외
15.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구역내
16. 도시계획구역외	도시계획구역외
17.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구역내
18. 도시계획구역외	도시계획구역외
19.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구역내
20. 도시계획구역외	도시계획구역외
21.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구역내
22. 도시계획구역외	도시계획구역외
23.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구역내
24. 도시계획구역외	도시계획구역외
25.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구역내
26. 도시계획구역외	도시계획구역외
27.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구역내
28. 도시계획구역외	도시계획구역외
29.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구역내
30. 도시계획구역외	도시계획구역외
31.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구역내
32. 도시계획구역외	도시계획구역외
33.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구역내
34. 도시계획구역외	도시계획구역외
35.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구역내
36. 도시계획구역외	도시계획구역외
37.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구역내
38. 도시계획구역외	도시계획구역외
39.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구역내
40. 도시계획구역외	도시계획구역외
41.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구역내
42. 도시계획구역외	도시계획구역외
43.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구역내
44. 도시계획구역외	도시계획구역외
45.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구역내
46. 도시계획구역외	도시계획구역외
47.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구역내
48. 도시계획구역외	도시계획구역외
49.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구역내
50. 도시계획구역외	도시계획구역외

축척 = 1:50,000